

피델리티 연금 이머징 마켓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펀드 코드 A5252)

| 투자 위험 등급 4 등급 (보통 위험) | | | | | |
|--------------------------|-------|----------|-------|-------|----------|
| 1 | 2 | 3 | 4 | 5 | 6 |
| 매우 높은 위험 | 높은 위험 | 다소 높은 위험 | 보통 위험 | 낮은 위험 | 매우 낮은 위험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피델리티 연금 이머징 마켓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의 투자설명서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피델리티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4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 | |
|-------------|--|
| 투자자 유의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에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실 수 있으며,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정식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p>※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의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p> |
|-------------|--|

| | | | |
|-----------|--|-----------|----------------------|
| 집합투자기구 특징 |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의 최고 100%까지 모두자신탁인 <u>피델리티 이머징 마켓 증권 모두자신탁 (채권-재간접형)</u> 이 발행한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모두자신탁은 외국 집합투자기구인 피델리티 펀드 - 이머징마켓채권펀드(Fidelity Funds-Emerging Market Debt Fund)에 주로 투자하며, 이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글로벌 이머징 마켓(신흥시장)의 채무 증권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수익(income)과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이 투자신탁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 수익자의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자금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저축투자신탁으로 가입자격 및 세제혜택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 |
| 분류 | 투자신탁, 증권(재간접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전환형 | | |
| 집합투자업자 | 피델리티자산운용주식회사 (02-3783-0901) (환헤지 관련 업무 위탁운용사: FIL Investment Management (Hong Kong) Limited) | | |
| 모집(판매) 기간 |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 모집(매출) 총액 | 60,000,000,000,000 좌 |
| 효력발생일 | 2018년 04월 27일 | 존속 기간 |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
| 판매회사 | 집합투자업자(www.fidelity.co.kr) 및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 | |

| 종류(Class) | 종류 C | 종류 C-e | |
|--|---|--|------------------|
| 가입자격 |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로서 판매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투자하는 투자자 | |
| 선취 판매수수료 | - | - | |
| 환매수수료 | - | - | |
| 보수 (연, %) (2017년 7월말 기준) | 판매 | 0.6000 | 0.5000 |
| | 운용 | 0.1000 | 0.1000 |
| | 수탁회사 | 0.0400 | 0.0400 |
| | 일반사무관리회사 | 0.0250 | 0.0250 |
| | 기타비용 총보수·비용 | 0.0143 0.7650 | 0.0140 0.6650 |

| | | |
|-----------|--|--------|
| 합성 총보수·비용 | 1.7993 | 1.6990 |
| ※ 주식사항 | <p>※ 위에 기재된 종류(Class)는 일반 투자자들이 주로 투자하는 종류를 명시한 것으로서, 상기 종류 수익증권 외에 종류 S 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 2 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p> <p>※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제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상기 작성기준일 직전 1년 동안 발생한 기타비용 비율이 추정치로 사용되었습니다.</p> <p>※ 증권거래비용은 이 투자신탁이 재간접형이므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p> <p>※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p> <p>※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과 이 투자신탁의 모두투자신탁에서 발생한 보수 및 기타비용을 모두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비용에 따라 안분한 값의 합을 순자산 연평균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값과 모두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외국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 비율(외국집합투자기구의 직전 회계연도의 총보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으며 외국집합투자기구로부터 환급 받는 금액을 반영하여 연 1.02%로 추정하였음)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p> <p>※ 총보수·비용 비율 및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이용된 추정치들(즉, 이 투자신탁 및 모두투자신탁의 기타비용, 외국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 비율)은 각기 다른 대상기간의 숫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 총보수·비용 비율 및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위 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p> | |

| | | | |
|-------|--|-------|---|
| 매입 방법 | <p>· 오후 5 시 이전: 제 3 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p> <p>· 오후 5 시 경과후: 제 4 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p> | 환매 방법 | <p>· 오후 5 시 이전: 제 3 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제 8 영업일 (D+7)에 환매대금 지급</p> <p>· 오후 5 시 경과후: 제 4 영업일 (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제 9 영업일 (D+8)에 환매대금 지급</p> |
|-------|--|-------|---|

| | | |
|-----|--|--|
| 기준가 | <p>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공고·게시일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신탁계약에 명시된 기발생된 부채, 수수료,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을 공고·게시일 직전일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 좌 단위로 원 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 5입하여 원 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p> <p>공시 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fidelity.co.kr), 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p> | |
|-----|--|--|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의 최고 100%까지 모두자신탁인 피델리티 이머징 마켓 증권 모두자신탁 (채권-재간접형)이 발행한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모두자신탁은 외국 집합투자기구인 피델리티 펀드 - 이머징마켓채권펀드(Fidelity Funds-Emerging Market Debt Fund)에 주로 투자하며, 이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글로벌 이머징 마켓(신흥시장)의 채무 증권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수익(income)과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 합니다.

참조지수: JP Morgan Emerging Markets Bond Index Global Diversified Hedged to KRW

* JP Morgan Emerging Markets Bond Index Global: 미국은행그룹인 JP Morgan 이 작성하여 발표한 글로벌 신흥시장 내 거래되는 대외 채권 지수

* JP Morgan Emerging Markets Bond Index Global Diversified: JP Morgan Emerging Markets Bond Index Global 에 비하여, 발행된 채권 비중이 낮은 국가에 대한 비중은 늘리고 발행된 채권 비중이 높은 국가에 대한 비중은 줄이는 등, 국가별 비중을 보다 균등하게 배분한 지수.

* JP Morgan Emerging Markets Bond Index Global Diversified hedged to KRW: JP Morgan Emerging Markets Bond Index Global Diversified 지수에 대해 한국원화로 헤지한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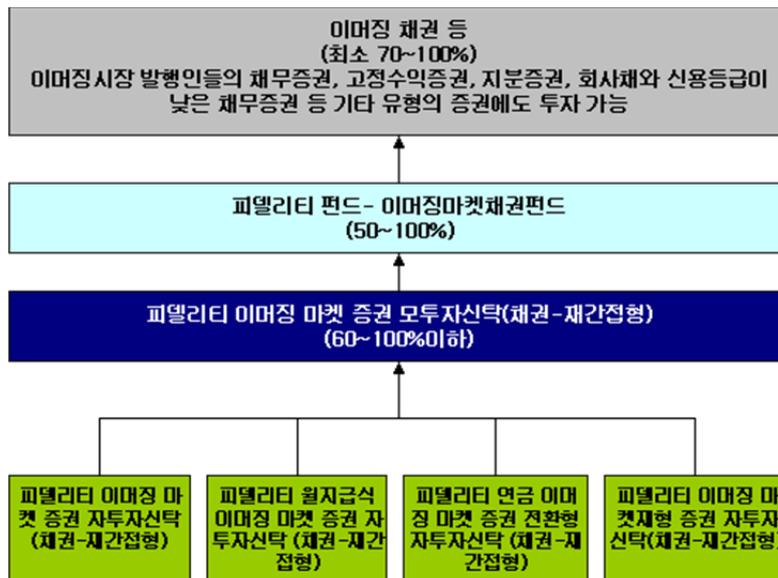
2.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의 최고 100%까지 모두자신탁이 발행한 수익증권에 투자하며, 모두자신탁은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자산총액의 최고 100%까지 투자합니다.

모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피델리티 펀드-이머징마켓채권펀드 (Fidelity Fund - Emerging Market Debt Fund)로서, 이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글로벌 이머징마켓의 채무 증권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수익(income)과 자본이득을 달성하고자 함
- 이머징마켓 발행인들의 현지시장 채무증권, 채권, 주식, 회사채 및 낮은 등급의 채무증권을 포함한 여러 유형의 증권에도 투자할 수 있음
- 라틴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동유럽(러시아 포함) 및 중동 지역에 주로 투자하나, 위 지역들에 한정되지 않음
- 펀드의 순자산에 중국의 적격시장에 상장되거나 매매되는 역내 중국 고정수입증권(fixed income securities)에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음

3 수익구조



4.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2018년 3월말 기준)

| 성명 | 생년 | 직위 | 운용현황 | |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
|-----|------|----|---------------------|--------------|--|
| | |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 다른 운용자산규모 | |
| 정은주 | 1985 | 차장 | - | - | [주요 경력] 2018.4 이후 피델리티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매니저 2014.4 - 2018.3 피델리티자산운용 법무 및 준법감시팀 2009.11 - 2014.4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 법무 및 준법감시팀 [학력 및 기타 이력]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

- ※ 상기 운용현황은 모두자산탁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해당사항 없습니다.
- ※ 운용전문인력이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외국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전문인력

(2017년 7월말 기준)

| 성명 | 생년 | 직위 | 운용현황 | | 주요 경력 및 이력 |
|-------------|------|-----------|---------------------|--------------------------|--|
| | |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 다른 운용자산규모 (USD 백만) | |
| Steve Ellis | 1970 | 포트폴리오 매니저 | 3 | 1,343.93 | 경력: 2012 - 현재 EMD 포트폴리오 매니저 Fidelity Worldwide 2006 - 2012 Goldman Sachs AM 2001 - 2006 Lehman Brothers 1997 - 2001 ING Barings 1993 - 1997 NatWest Markets 학력 및 자격: Bristol University, BSc (Hons) Economics |

다. 모두자산탁의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 운용전문인력

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모두자산탁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헤지거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업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외 자산운용회사에 위탁합니다.

이러한 헤지 거래는 해외 위탁 자산운용회사 내 외환 헤지거래를 전담하는 팀에서 팀 단위로 수행하는 업무입니다(다만, 헤지거래 여부 및 그 수준을 결정하는 팀과 실제 헤지거래를 위한 매매주문업무를 수행하는 팀이 다른 등 관련된 팀이 다수인 관계로 담당팀을 특정하여 기재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편, 헤지거래는 모두자산탁이 투자하는 외국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내용에 따라 소극적(passive)으로만 발생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제2부, 9. 가, (4) 위험관리의 내용 중 (가) 환위험 관리 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투자실적 추이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단위: %)

| 연도 | 최근1년차 | 최근2년차 | 최근3년차 | 최근4년차 | 최근5년차 |
|----|-------|-------|-------|-------|-------|
|----|-------|-------|-------|-------|-------|

| | 2016.08.01 ~ 2017.07.31 | 2015.08.01 ~ 2016.07.31 | 2014.08.01 ~ 2015.07.31 | 2013.08.01 ~ 2014.07.31 | 2012.08.01 ~ 2013.07.31 |
|---------------------------------------|----------------------------|----------------------------|----------------------------|----------------------------|----------------------------|
| 연금 이머징 마켓 증권 전환형 자(채권-재간접형) | 3.82 | 8.95 | 0.43 | 11.28 | 0.02 |
| 연금 이머징 마켓 증권 전환형 자(채권-재간접형) 종류 C | 3.77 | 8.92 | 0.41 | 11.28 | 0.02 |
| 연금 이머징 마켓 증권 전환형 자(채권-재간접형) 종류 C-e | 3.87 | 9.02 | 0.51 | 11.01 | |
| 연금 이머징 마켓 증권 전환형 자(채권-재간접형) 종류 S | 4.22 | 9.39 | 0.86 | | |
| 참조지수 | 4.65 | 12.13 | -0.69 | 12.69 | 0.45 |

- 1) 참조지수: JP Morgan Emerging Markets Bond Index Global Diversified Hedged to KRW
- 2) 참조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음
- 3) 대상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대상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하였음. 다만 각 투자신탁 및 종류별로 설정시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연환산한 수익률 편차가 커질 수 있음

※ 상기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2017년 7월말 기준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조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전 대상 기간에 대하여는 과거(변경전) 참조지수를 사용하였습니다.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1. 주요 투자위험

| 구 분 | 주된 투자위험 |
|-----------------|--|
| 투자원금손실위험 | 투자신탁의 투자 원금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보장되거나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투자 원본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또는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투자자들을 제외한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시장위험 및 개별유가증권위험 | 투자신탁재산을 외국 채권에 투자하는 외국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외국집합투자증권 및 채권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위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채권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경우, 그러한 기초투자자산의 가치는 금리와 발행자의 신용도에 따라 변동되게 됩니다. 채권 등 고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는 금리 및 환율의 변동에 따라 변합니다. 몇몇 투자신탁은 가격하락 및 자본손실의 위험을 피할 수 없는 고수익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간 등급 유가증권, 등급이 낮은 유가증권 및 이에 상당하는 등급이 없는 유가증권은 등급이 높은 유가증권 보다 수익 및 가격의 변동 폭이 더 넓을 수 있습니다. |
| 환율변동 위험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두자신탁은 환율위험을 헤지하고 목표 환헤지 비율은 약 90% 수준이지만,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 분산투자관련위험 | 오직 한 국가에만 투자하는 투자신탁은 당해 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 상황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이 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투자자산에 대한 거래비용이 다른 국가에서 보다 더 높고 유동성은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투자가 중소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히 현금흐름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국가 또는 투자형태를 전문으로 하는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유사한 거래(특히 대규모 거래)라고 할지라도 대형 투자신탁과 비교하여 투자신탁의 운용비용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래 투자자들은 투자신탁 선정에 있어 이러한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국가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은 어느 한 국가의 위험에 노출이 적어지는 대신에 많은 국가의 위험에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통화로 표시된 투자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은 통화가치의 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수익권 가치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신흥시장위험 |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전부 혹은 일부를 신흥시장의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러한 증권이 선진국 시장의 증권보다 변동이 더 심하고, 따라서 선진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신탁과 비교하여 가격변동의 위험이 더 클 수 있고 환매가 정지될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 파생상품투자위험 | 파생상품(선물, 옵션 등)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론적으로 옵션매도로 인한 손실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러한 파생상품 거래는 |

| 구 분 | 주된 투자위험 |
|--------------------|---|
| | 투자신탁재산에 큰 손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 재간접투자위험 | 모투자신탁은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다른 투자신탁보다 일반적으로 환매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기간의 시차를 두고 평가에 반영됩니다. 그 결과 당해 투자신탁에 대하여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일정기간 이전 가격으로 평가된 가격입니다. 주요 투자대상인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전략의 상세한 내역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가격조정정책 관련 위험 |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가격조정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집합투자기구는 펀드의 대량 매입과 환매에 관련되는 비용을 당일 거래하는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장기 투자자들을 희석화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펀드의 기준가를 인위적으로 조정합니다. 즉, 외국집합투자기구는 특정일에 투자자의 거래 금액 및 유형에 따라 기준가가 인위적으로 상향 혹은 하향 조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인위적인 조정에 따라서 본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가격조정정책으로 인한 기준가의 변동성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신용디폴트스왑(CDS) 투자위험 | 이 계약은 기초증권 또는 증권바스켓의 인정된 신용도에 따라 시가가 변동하는 신용과생산품을 말합니다. 보장(Protection)의 매도시, 펀드는 기초증권 또는 증권바스켓을 실제 매입한 것과 유사한 기초자산에 대한 신용위험을 부담합니다. 보장(Protection)의 매입시, 기초증권(또는 증권바스켓 중 어느 한 증권)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펀드는 스왑계약 원금과 채무불이행 발생 시점 현재 시장에서 결정된 기대회수가치 간의 차액에 기초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금액을 수령합니다. 스왑계약은 당사자 양자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이기 때문에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을 부담합니다. 이러한 위험 경감을 위해 담보약정이 이루어집니다. CDS의 계약위험은 ISDA 표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경감될 수 있습니다. CDS의 경우 이를 구성하는 기초 증권(들) 보다 유동성이 더 낮을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CDS 포지션의 청산 능력 및 청산가격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 해외 유가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유가증권이 특정 국가에 상장되어 거래됨에 따라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배당소득,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
| 전환위험 | 이 투자신탁은 전환대상 투자신탁의 수익증권과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투자신탁으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동시에 다른 전환대상 투자신탁 중 동일한 종류의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전환 과정에 이 투자신탁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할 때까지 시차가 발생하며, 이로 인한 기회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할 경우 투자대상 자산 및 투자대상 자산의 비율이 달라져 투자위험도 이 투자신탁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환대상 투자신탁의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확인하시고 전환신청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 환매제한 및 환매연기위험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일정한 경우 환매청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또는 등록신청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
| 해지위험 | 투자신탁이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해지될 수 있습니다. |

※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위험을 명시한 것으로 투자위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투자위험 등급 분류

피델리티 자산운용 주식회사는 **투자위험, 운용성과에 따른 실제 수익률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신탁의 위험 등급을

6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연환산 표준편차는 5.04%으로,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은 6등급 중 **4등급(보통 위험)**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위험 등급 분류는 피델리티 자산운용의 내부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으로서 판매회사의 분류등급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위험 등급 분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결산시마다 변동성(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펀드의 주간 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을 재측정하며 투자위험등급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위험관리

가. 포트폴리오

펀드 운용과 관련된 다양한 리스크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리스크 요인별로 사전적/사후적 대응 방향을 수립·실행합니다. 또한, 법령 및 당사의 엄격한 내부규정에 근거한 내부 모니터링을 통하여, 고객에 대한 선량한 자산관리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나. 환위험 관리 전략

| 구분 | 세부내용 |
|---------------------------|---|
| 환헤지여부 | 모투자신탁은 피투자펀드 내 투자자산 중 매매가 자유로운 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투자하는 것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환위험을 소극적(passive)으로 헤지하고 있습니다. |
| 환헤지 방법 |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 거래를 주로 활용하여 환헤지 전략을 수행하며, 시장 상황 및 특성에 따라 여타 방법도 활용 가능합니다. |
| 목표 환헤지비율 | 모투자신탁의 목표환헤지비율은 포트폴리오 순자산의 약 90% 수준이지만, 실제 헤지비율은 목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환헤지 전략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 환헤지 비용 및 투자신탁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 호가중심인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특성상, 환거래는 거래 규모를 감안하여 거래 당시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형성되는 환율과 비슷하거나 경쟁력있는 환율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수료 등의 어떠한 거래 비용도 가격(환율)에 추가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거래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얻게 되는 어떠한 이득이나 손실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련된 비용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산출하거나 정확하게 추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헤지를 실행하게 되면, 매매가 자유로운 외국통화의 가치가 원화에 대비하여 하락하는 경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반면, 상기 외국통화에 대비하여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투자자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 또한 배제하게 될 것입니다. 헤지 효과는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에 반영될 것입니다. |

III.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1) 과세

※ 다음의 투자신탁 또는 수익자 관련 세무사항에 대한 안내는 일반적으로 모든 투자신탁에 대해서 참고용으로 제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세법의 변경, 과세 당국의 해석의 변경 및 정부정책 변화 등의 사유로 다음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정확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과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와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 구분 | 주요 내용 |
|-----------------------|--|
| 납입요건 |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 (퇴직연금 가입자부담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
| 연금수령요건 |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
| 세액공제 | 연간 연금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 (2014년 1월 1일 이후 납입금액부터 적용) |
| 연금수령시 과세 | 연금소득세 5.5 ~ 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이연퇴직소득세액의 70% 적용 |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인출 (연금수령) |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

| 구분 | 주요 내용 |
|-----------------|---|
|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에 한함)의 3개월 이상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
|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시 과세 | 연금소득으로 3.3~5.5% 분리과세 |
| 분리과세한도 |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제외) |
| 연금외수령시 과세 |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
| 해지가산세 | 없음 |

주1)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함.

* 2013년2월28일 이전에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따라 이 투자신탁에 가입하거나 이 투자신탁으로 이전한 수익자의 동 투자신탁 수익증권 계좌는 소득세법시행령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로 보아 과세하되, 다음의 사항은 종전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합니다.

[해지 관련 규정('15.1.1 이후 적용)]

| 구분 | '13.2.28. 이전 가입자 | '13.3.1. 이후 가입자 |
|----------------|---|--|
| 해지가산세 면제 여부 | 5년 이내 해지시 해지가산세 2.2% [면제사유] 천재지변 저축자의 사망, 퇴직, 해외이주, 폐업 저축자의 3개월 이상 치료·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 해지가산세 없음 |
| 분세 과세 방식 관련 | 부득이한 사 유에 해지 | 연금소득 분리과세 - 세액공제 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 : 3.3~5.5% - 이연퇴직소득 : 이연퇴직소득세액의 70% [부득이한 사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 의 3개월 이상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
| | 일반해지 | 세액공제 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 : 기타소득 분리과세 (16.5%) 이연퇴직소득 : 이연퇴직소득세 |

주1) '13.2.28. 이전 가입자 관련 특이사항

- 퇴직, 폐업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해지가산세는 면제되나,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 개인회생절차 개시, 부양가족의 요양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해지가산세는 부과되나,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

※ 위 내용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시행됩니다.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과세관청의 해석의 변경 및 정부정책의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환절차 및 방법

1. 동일 투자신탁내 수익증권의 전환

해당사항 없음

2. 전환대상 투자신탁간 수익증권의 전환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의 전부 또는 일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동시에 아래의 전환대상 투자신탁 중 **동일한 종류의 수익증권**을 매수(이하“전환”이라 합니다)할 수 있습니다.

- 피델리티 연금 코리아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피델리티 연금 아시아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주식)
- 피델리티 연금 미국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피델리티 연금 이머징마켓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 피델리티 연금 아시아 하이일드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 피델리티 연금 유럽 하이일드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수익자가 전환을 청구한 때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 (가) 피델리티 연금 코리아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에서 다른 전환대상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한 때에는 전환청구일(당일포함)부터 제 2 영업일(15 시 30 분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당일포함)부터 제 4 영업일(15 시 30 분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 4 영업일)에 전환처리합니다. 이 경우 전환대상 투자신탁을 매입하는 기준가격은 전환처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 (나) 피델리티 연금 아시아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주식)에서 다른 전환대상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한 때에는 전환청구일(당일포함)부터 제 3 영업일(17 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 4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당일포함)부터 제 8 영업일(17 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 9 영업일)에 전환처리합니다. 이 경우 전환대상 투자신탁을 매입하는 기준가격은 전환처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 (다) 피델리티 연금 이머징 마켓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피델리티 연금 아시아 하이일드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피델리티 연금 미국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및 피델리티 연금 유럽 하이일드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에서 다른 전환대상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한 때에는 전환청구일(당일포함)부터 제 3 영업일(17 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 4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당일포함)부터 제 8 영업일(17 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 9 영업일)에 전환처리합니다. 다만, 피델리티 연금 아시아 하이일드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의 경우, 해외 금융기관의 연휴 등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전환청구일 (당일포함)부터 제 10 영업일(17 시 이후 전환청구시 제 11 영업일)에 전환처리합니다. 이 경우 전환대상 투자신탁을 매입하는 기준가격은 전환처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수익자는 판매회사가 전환대상 투자신탁을 판매하지 않거나 전환대상 투자신탁의 모든 종류의 수익증권을 판매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다른 전환대상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의 전환이 제한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기 이전에 전환을 원하는 전환대상 투자신탁의 해당 수익증권이 판매회사에서 판매되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익자는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신탁 수익증권에 대하여 전환을 청구 할 수 있으나 이는 판매회사 정책이나 전산 시스템 등 판매회사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사의 사정에 따라 일부 전환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미리 판매회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3년 2월 28일 이전 가입자는 일부 환매 및 일부 전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타 전환관련 자세한 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요약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
|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fidelity.co.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fidelity.co.kr) |
|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fidelity.co.kr) |